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광재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0102
----------	-------

발의연월일 : 2026. 7. 22.

발 의 자 : 이광재 · 박지혜 · 김용만
이재강 · 전용기 · 김병주
안태준 · 허성무 · 이연희
조승래 · 박희승 · 박지원
정태호 · 이수진 의원
(14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중앙관서의 장등이 소관 국유재산을 관리·처분하도록 하고 있으며, 일정한 법적 요건을 충족할 때 일반재산인 국유재산을 공유재산 등과 교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주민을 위한 공공시설이나 지역 핵심 기반시설 확충을 위해 국유재산과 공유재산을 교환하려 해도, 현행 교환 요건이 주로 국가 행정 목적이나 처분이 곤란한 경우 등 국가의 필요 위주로 엄격하게 제한되어 있어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현안 사업에 필요한 부지를 적기에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에 지방자치단체가 공용·공공용 시설, 주민복지시설 또는 지역전략산업·첨단산업 기반시설을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유재산과 그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공유재산을 교환할 수 있는 명시

적 근거를 신설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원활한 부지 확보를 돕고 지역 현안 사업의 적기 추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54조제1항제5호 신설).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유재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4조제1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지방자치단체가 공용·공공용 시설, 주민복지시설 또는 지역전략 산업·첨단산업 기반시설을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국유재산을 그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공유재산과 교환하는 것으로서 국유재산의 개발 또는 활용도 제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경우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교환에 관한 적용례) 제54조제1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교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4조(교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반재산인 토지·건물, 그 밖의 토지의 정착물, 동산과 공유 또는 사유재산인 토지·건물, 그 밖의 토지의 정착물, 동산을 교환할 수 있다.	제54조(교환) ① ----- ----- ----- ----- -----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u><신 설></u>	5. <u>지방자치단체가 공용·공공용 시설, 주민복지시설 또는 지역전략산업·첨단산업 기반 시설을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국유재산을 그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공유재산과 교환하는 것으로서 국유재산의 개발 또는 활용도 제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경우</u>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